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
2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	12
4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	16
5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8. 16.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4. 8. 16.
- 다. 상정일자 :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8. 3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나. 위탁기간 : 2025. 1. ~ 2027. 12.(3년간)
- 다. 사업비 : 1,188백만원((국594(50%), 도178.2(15%), 군415.8(35%))
  - 1) 주 택 : 982백만원(국 491, 도 147.3, 군 343.7)
  - 2) 비 주 택 : 162백만원(국 81, 도 24.3, 군 56.7)

3) 지붕개량 : 44백만원(국 22, 도 6.6, 군 15.4)

라. 사업량 : 316동/연(주택·비주택 철거 309, 지붕개량 7)

마. 위탁비용 : 95백만원/연(사업비의 8%)

바. 위탁범위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1)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업체 선정, 계약 체결

3) 슬레이트 면적조사, 사업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4)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사. 그간 추진현황

1)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

(단위 : 동)

연도	계	주택	창고	축사	기타	비고
2013	10,784	7,914	1,564	917	389	3,799동 감
2021	6,985 (▽35.2%)	4,824 (▽39%)	1,302 (▽16.8%)	738 (▽19.5%)	121 (▽68.9%)	

2) 추진실적

(단위 : 동)

구분	철거 현황				비고
	철거율(%)	계	환경과	도시건축과	
계	33.0	3,567	3,380	187	
2013년		138	129	9	
2014년		162	100	62	
2015년		262	199	63	
2016년		189	136	53	
2017년		368	368	-	
2018년		230	230	-	
2019년		331	331	-	
2020년		546	546	-	
2021년		414	414	-	
2022년		335	335	-	
2023년		335	335	-	
2024년		257	257	-	추진중

### 3) 추진방법

- 2013~2016년 :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
- 2017년 : 직접 수행(민간경상보조사업)
- 2018년 : 직접 수행(시설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개정(2017.2.28.)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20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

- 2019~2021년 : 민간위탁 추진(한국석면안전협회)
- 2022~2024년 : 민간위탁 추진(한국석면안전협회)

### 4)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

- 20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 범위 확대, 석면 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 (2018.11.)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 아. 운영계획(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1) 업체선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2) 참가자격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3) 위탁업체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절대평가(40점), 상대평가(60점)
  -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실적평가(30점), 경영상태(10점)
  -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심의위원 평가, 상대평가)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 4)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산식에 의해 담당부서에서 평가
- 상대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 5) 위탁기간 : 2025. 1. ~ 2027. 12.(3년간)

## 4.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

- 1) 2013~2016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였으나,
- 2) 2017년 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탁 규정 삭제로 직접 수행한 결과,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2021년, 2022년~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추진중임.

### 나. 관련 법령

-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3)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4.1. 환경부)

다. 향후 계획

1) 2024. 8. :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제출

2) 2024. 9. ~ 10. : 민간위탁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3) 2025. 1.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사업비의 8%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수탁 완료일이 2024. 12. 31.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의 소지가 있어 처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철거가 시급한 실정임.
- 슬레이트 처리사업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처리비용 절감과 슬레이트 처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아울러,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신뢰도가 높은 전문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8. 16.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8. 16.

다. 상정일자 :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8. 3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이 2024. 12.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업명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나. 주기장 현황

명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치	거창읍 정장리 394, 394-3번지 일원
면적(주기면수)	5,863㎡(100대)

부 대 시 설	사무실, 화장실, 회의실, CCTV, 가로등
---------	--------------------------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현황

- 수탁자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거창지회
- 수탁기간 : 2021. 12. 26 ~ 2024. 12. 25(3년간)
- 이용현황 : 일평균 50여대
- 사 용 료 : 2022년(3,829천원), 2023년(4,026천원), 2024년(3,761천원)
- ☞ 재산평가가격의 연1천분의 25

다. 운영계획

- 1) 근 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

2) 배 경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
- 건설기계 운행자의 자발적 주기 유도로 주택가, 도로변 등의 불법주기 행위 개선

3) 위탁개요

- 기 간 : 2024. 12. 26 ~ 2027. 12. 25(3년간)
- 시 설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 치	부지면적	건 축 물	시 설 물
거창읍 정장리 394, 394-3	5,863㎡	관리동 1동 (1층, 99.75㎡)	사무실 1개, 회의실 1개, 휴게실 1개, 화장실 3개, 싱크대 2개, 신발장 1개, 환풍기 2개, 수도 2개, 전기쿡탑 2구, 보일러 1개, CCTV 6대, 중앙감시장치 1대, 전기통신시설 1식, 관정 1개소, 웬스 141경간

－ 대상업무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 전 시설물 및 사무용품 등 재산의 선량한 관리
- 공영주기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 공영주기장 내 주차된 차량 및 전반적인 시설물 모든 사항에 대한 도난, 화재 등 재난예방 조치
- 공영주기장 운영, 이용자,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 사 용 료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라. 수탁자 모집

- 1) 방 법 : 공개모집
- 2) 신청자격 : (거창군내 주소를 둔)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3)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4) 평가방법 : 정량(20) + 정성평가(80)

마. 향후계획

- 1) 2024. 10. : 수탁단체 모집공고
- 2) 2024.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3) 2024. 11. : 수탁단체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4) 2024. 11. : 위탁사항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바. 참고사항 : 붙임

- 1) 관련법 발췌
- 2) 현장사진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이 2024. 12.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거창군내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주기면수가 100면인데 비해 일평균 50여대가 이용하고 있어 거창시내 불법주기 근절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소속이나 차종에 상관없이 주기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8. 16.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4. 8. 16.
- 다. 상정일자 :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8. 3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이 2024. 12. 31.자로 만료,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운영현황
  - 1) 수탁자 : (주)거창80번택시(대표 이진연)
  -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최초 위탁 : 2012. 7. 1.
  - 3) 지원사항 : 운영차량, 운영비(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등) 분기별 정산
  - 4) 소요예산 : 715,766천원 ※ 2024년 기준
  - 5) 차량대수 : 13대

※ 현재 9대 운영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100명당 1대로 시행규칙이 개정(2023. 7.)됨에 따라 예산 편성 후 2024년 8월 4대 구입완료 예정

6) 이용대상자 : 442명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7) 운행지역 : 거창군 관내, 경상남도 전지역,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무주군, 장수군, 김천시, 성주군

8) 이용요금 : (관내) 2,000원, (관외)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 나. 위탁계획

### 1)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2) 배경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제공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사항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13대 운영
- 소요예산 : 715,766천원(국123,500, 군592,266)
- 위탁대상 업무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송사업 전반
  - 종사자 16명(운전원 15명, 사무원 1명) 관리
  - 차량 유지관리, 대군민 서비스 제공 등

#### 4) 심사방법 및 수탁자 결정 방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관내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확보와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 선정방법 :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 심사
- 평가방법 : 객관적평가(30) + 주관적평가(70)

#### 다. 향후계획

- 1) 2024. 10. : 수탁단체 모집 공고
- 2) 2024. 10. : 특별교통수단심의위원회 심의
- 3) 2024. 11. : 수탁단체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 4) 2024. 11. : 위탁사항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공모 절차를 통하여 재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해당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차량 및 운영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나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여 위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 동의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8. 16.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8. 16.

다. 상정일자 :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8. 3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 서북부경남거점APC의 민간위탁 운영 관련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서북부경남거점APC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시설명 : 서북부경남거점APC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다. 시설현황 : 12,603m<sup>2</sup>(선별장 5,850m<sup>2</sup>, 저온저장고 3,577m<sup>2</sup>, 기타 3,176m<sup>2</sup>)

라. 위탁현황

1) 위탁기관 :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마. 민간위탁 재계약

1) 당 초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2) 재 계약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 >**

□ 조직유형 : 거창군 생산유통통합조직

(거창군 6개 관내 농협이 참여하여 '21. 12월 설립, '22년 산지유통혁신조직 선정)

□ 설립목적 : 조합간 경제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

출자자 수(출자법인)	총 출자액(천원)	평균	최고	최저
6개 농협	1,800,000	300,000	300,000	300,000

출자법인(6개) = 거창농협, 거창사과원예농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송대농협

## 4. 참고사항

### ○ 추진사항

#### 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자체평가

1) 평가일자 : 2024. 8. 9.

2) 평가대상 : 기 수탁기관(거창한거창조합공동법인)

3) 평가내용 : 성과평가(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위탁적정성

4) 평가자 : 수출유통담당

#### 나.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심의

1) 평가일자 : 2024. 8. 12. ~ 14.

- 2) 평가대상 : 기 수탁기관(거창한거창조합공동법인)
- 3) 평가내용 : 성과평가(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위탁적정성
- 4) 평가자 : 유통센터운영위원회

○ 관련 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다.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제17조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민간위탁 연장 추진 계획 1부.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북부경남거점 APC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재계약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의 과정을 축소하고 보다 빠른 처리, 정확한 관리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농업인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2024년 3월 ‘거창사과 유통시장 개혁을 위한 군민대토론회’ 개최 시 서북부경남거점 APC 운영에 있어 공선참여 농가 확대, 마케팅 역량제고, 농가 수취가 제고, 선별·정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거창사과의 명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재계약과 전국단위 공모의 장·단점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있어 적합한 민간위탁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재계약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8. 16.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8. 16.

다. 상정일자 :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8. 3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복농촌과장)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2024. 12. 31.)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 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기초거점서비스 공급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1)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 2)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공모사업) 시행
  -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 확보(전년도 사업실적 중요평가 요소)
- 3) 농촌협약사업 추진 지원
-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 지원
- 5)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
- 6) 거창군 발주 S/W사업 병행(협업) 추진

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안)

- 1)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간)
- 2) 위 치 :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신활력공유센터 준공 후 이전)
  - ※ 현재 거창읍 월천권역 활성화를 위해 권역 사무실에 위치
- 3) 구 성 원 : 상근직 3명(사무국장, 팀장 2) / 비상근 센터장
  - ※ 구성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

다. 연간 소요예산(2025년 기준)

- 1) 운영비 : 50백만원(군비)
- 2) 사업비 : 354백만원(국 248, 도 32, 군 74) /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

구분	운영비 (매년 고정금액)	사업비 (2025년 확보금액)
재원	군비 100%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국70%, 도9%, 군 21%)
합계	<b>50,000천원</b>	<b>354,000천원</b>
인건비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범위 내에서 상근직 3명 인건비 편성(총액인건비)  → 추후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증감 →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로 작용	<b>106,000천원</b> - 사무국장 인건비(1명) 2,600천원 × 12개월 = 31,200천원 - 팀장 인건비(2명) 2,400천원 × 12개월 × 2명 = 57,600천원 - 상근직 3명 4대보험 810천원 × 12개월 = 9,720천원 - 상근직 3명 퇴직적립금 620천원 × 12개월 = 7,440천원 - 예비비 40천원
수 당	<b>35,400천원</b> - 센터장 활동비 1,500천원 × 12개월 = 18,000천원 - 상근직원 초과근무 수당 200천원 × 3명 × 12개월 = 7,200천원 - 상근직원 출장여비 100천원 × 3명 × 12개월 = 3,600천원 - 상근직원 명절휴가비 1,100천원 × 3명 × 2회 = 6,600천원	
운영비	<b>14,600천원</b> - 사무기기 임대비(복사기, 정수기 등) - 사무용품 구입 - 전기·통신 요금 등	
사업비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공모로 매년 300백만원~400백만원 사업비 확보	<b>248,000천원</b> -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등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 기준),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8조(센터 설치), 제20조(위탁운영)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 (2024. 12. 31)됨에 따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기초거점서비스 공급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추진방향을 보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근직원 공개모집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역량있는 지역 인재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 위탁사업 외 개별사업 S/W분야 등 거창군 발주사업 병행수행 허용, 이윤, 위탁수수료 등 기관수익창출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간의 추진방향에서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의 이해도와 전문성, 책임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나 기여도까지도 평가가 되어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가 요구되며 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